소청심사위원회 공고 제2019 - 10호

소청심사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추가합격자 공고

소청심사위원회 공고 제2019-5호(2019. 4. 30.), 제2019-8호(2019. 6. 7.)에 따른 「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채용시험」의 추가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15일

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

1. 추가 합격자 명단

임용예정 직급	임용예정 분야	임용인원	합 격 자
전문임기제 나급	소청심사 법률전문가	1명	**104 박○훈**

2. 합격자 등록 및 서류제출 안내

가. 제출서류

① 신원 진술서 2부 * 동일한 사진(3㎝×4㎝) 2매 부착, 자필서명 <서식1>

②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<서식 2>

※ 신체검사 후 발행까지 수일이 소요되므로 제출기일에 늦지 않도록 유의

③ 본인의 기본증명서(상세) 2부

④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

⑤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*'후견등기에 관한 법률' 제15조 참고

나. **제출방법** : '19. 7. 22.(월)까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로 제출

※ 등록기간 마감일 18:00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

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(세종청사 7동)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(우 30102)

3. 기타

○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’19. 8월초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.

※ 신원조사·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

○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합격 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(☎ 044-201-86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〈서식 1〉

신 원 진 술 서

※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☑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성 명	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[사 진]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· (3.5cm×4.5cm)
등록기준지						
주 소						
실거주지						
직 장	직장명 : 소재지 :			연락처	직장전화 : 휴 대 폰 : E-mail :	
국 적	□ 대한민국	□ 복수국적 국가명:	□ 외국국적 국가명:	배우자 및 자녀 국적		
특 기		취 미		자격증		

재 산	본인 및 배우자	부동산 : 만원,	동산 : 만원,	채무 : 만원	
	미혼 자녀	부동산 : 만원,	동산 : 만원,	채무 : 만원	
정당·사회 단체 활동	□ 있음	단 체 명	기 간	직 책	
	□ 없음		. . ~ . .		
			. . ~ . .		

병 역	본 인	군 별	병 과	최종 계급	기 간	미필 사유
					. . ~ . .	
	자 (성명)				. . ~ . .	
	자 (성명)				. . ~ . .	

학 력	학 교 명	기 간	전공 학과	학 위	소 재 지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
210mm×297mm 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

(뒤쪽)

경 력	기관 또는 업체명		기 간	직 책(직급)	상벌 관계(일자)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해외 거주 사실	거주 국가		기 간	거주 목적	동반 가족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가족 관계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직 업·직 책	거 주 지
부모 배우자 자녀					
배우자 부모					
북한 거주 가족					

친교 인물	관 계	성 명	직 업·직 책	연 락 처

1.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.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작 성 자 성명 인(서명 또는 날인)

210mm×297mm 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■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
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■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■ 본인(가족 포함)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
▪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 「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▪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

■ 본인 및 가족 동의 (자녀는 결혼·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,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)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서 명	
	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본인			자필서명	자필 서명
배우자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
※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(밑줄은 민감정보)

본 인(예시)	가 족(예시)
▪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, 공무원인사기록(행자부·인사처) ▪ 주민·범죄경력·수사·수배 조회자료(경찰청) ▪ 출입국자료(법무부) ▪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 ▪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 ▪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 ▪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	▪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(행자부) ▪ 출입국자료(법무부) ▪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 ▪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 ▪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 ▪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

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

〈서식 2〉

(앞쪽)

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 (한 자)	( )	사 진 (3㎝ × 4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	cm	체 중		kg
가슴둘레		cm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 ) 우: ( 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 ) 우: ( )
안 질 환			이비인후질환		
치 아			호흡기질환		
간 질 환			신경질환		
소화기질환			피부질환		
순환기질환			정신질환		
비뇨기질환			혈청검사(매독)		
흉부X선 검사			기 타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 ] 합 격 [ ] 불 합 격 [ ] 판 정 보 류	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	
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[의료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 -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  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- '만성골수성백혈병'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  - '매독(syphilis)' 양성으로 나타나나,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
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지 않음
   나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.1, 오른쪽 0.1
   -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(microliter)당 6만개 이하인 '혈소판 감소 자색반' 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
   ※ 판정 보류 사유: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